

서울서부지방법원 2023. 2. 14 선고 2022가단4970 판결 [사해행위취소 등]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B

피 고 1. C

2. D

소송대리인 E

변 론 종 결 2023. 1. 17.

판 결 선 고 2023. 2. 14.

주 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21. 8. 28.자 매매계약 취소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 C과 E(F생)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2020. 7. 6.1)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4,800,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3.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 3항 및 피고들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한 2021. 8. 28.자 매매계약을 4,800,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G은행의 E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이다.

나. 원고는 E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가소69089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6. 12. 9. 'E은 원고에게 3,540,636원 및 그 중 1,860,809원에 대하여 2016. 12.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8.9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받았다. 위 결정은 2016. 12. 31. 확정되었다(이하 원고의 E에 대한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다. 피고 C과 E의 모친인 H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0. 5. 26. 사망하였고, 상속인들인 I, J, K, L, E, 피고 C은 2020. 7. 6.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 단독 소유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분할협약'라 한다).

라. 피고 C은 2021. 7. 1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26.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실제 상속재산분할협약은 2020. 7. 6.인데, 망인의 사망일인 2020. 5. 26.이 등기원인일로 기재되었다).

마. 피고 C은 2021. 8. 28. E의 딸인 피고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179,400,000원에 매도하였고, 피고 D은 2021. 9. 16.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8. 2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한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2. 7. 19. 주식회사 M 앞으로 채권최고액 30,000,000원, 15,600,000원인 두 건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D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인 2021. 9. 16. 위 각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21. 9. 16. 피고 D을 채무자, 주식회사 N을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130,9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아. 이 사건 분할협의 당시 E에게는 상속받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지분 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 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각하되는 부분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사해행위는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행하여진 법률행위에 국한되며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의 법률행위는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대법원 2004. 8. 30. 선고 2004다21923 판결 등 참조).

원고는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1. 8. 28.자 매매계약도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위 매매계약은 수익자와 전득자 사이에 행하여진 법률행위로서 사해행위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할 것인바, 이 부분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채권은 이 사건 분할협의를 있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피고들은 E이 원고에 대한 양수금채무를 모두 변제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위 채권이 모두 변제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통하여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해당하는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되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E은 이로 말미암아 원고를 비롯한 자신의 채권자를 해하게 되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며, 피고들도 이러한 사정을 알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 피고들의 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E의 채무 초과 상태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피고 C이 망인의 사망 전까지 망인을 모시고 살았기에 피고 C이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합의한 것이므로 사해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다746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 C은 E의 동생이고, 피고 D은 E의 딸인 점, 피고들이 재산분할협약에 이르게 된 경위, 동기, 그 협약의 내용이 정상적임을 증명하는 자료나 재산분할협약 이후의 정황 등에 관한 아무런 구체적인 주장증명을 하지 않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분할협약으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E의 일반채권자들을 해할 것이라는 점에 대해 피고들이 알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와 원상회복의 방법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쳐져 있던 주식회사 M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이 사건 분할협약 이후 각 말소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이 사건 분할협약의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은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의 방법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사해행위의 목적물이 가지는 공동담보가액과 채권자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하여야 인데, 이 사건 부동산의 변론종결 당시의 가액(변론종결일에 가까운 2021. 8. 28. 피고 D의 매수금액 179,400,000원)에서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각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나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분할협약 당시 남아 있던 피담보채권액 합계액은 약 1,700만 원이다)을 공제한

금액이 원고의 피보전채권인 이 사건 채권의 금액인 4,800,849원을 초과하므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이 사건 부동산 중 1/6 지분에 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보전채권액인 4,800,849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849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피고들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분할협의를 취소 및 원상회복을 구하는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혜원

별지

1) 원고는 2022. 12. 21.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를 통하여 피고 C와 E 사이의 '2020. 5. 26.자 상속재산분할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으나, 이는 부동산등기부등본상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을 그대로 기재한 것으로 보이고, 실제 상속재산분할계약이 2020. 7. 6.에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선행하여 판단한다.